



www.jp.go.kr

군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	기 관 의 장
71	
람	

제609호 2020년 9월 25일(금)

고 시

○ 증평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----- 2

공 고

- 증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----- 4
- 증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-- 8

회					
람					

발행 : 증평군 편집 : 문화체육과 (☎835-4133, 우27927, 충북 증평군 증평읍 광장로 88)

증평군 고시 제2020-105호

증평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

「증평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(선도지구)」의 시행계획 승인사항에 대하여 「농 어촌정비법」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, 제8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승 인 고시합니다.

2020년 9월 25일

증 평 군 수

- 1. 사업의 명칭 : 증평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(선도지구)
- 2. 사업의 목적 : 농촌 중심지를 지역의 잠재력과 고유의 테마를 살려 특성과 경쟁력을 갖춘 농촌 발전거점으로 육성하고, 배후마을과 도시를 연결하는 연결 거점으로서 지역생활권 구현의 중심 역할 수행
- 3. 사업의 위치 : 증평군 전역
- 4. 사업비: 10,000백만원(국비 7,000, 군비 3,000)※ 사업대상지 손실보상금 한도액 초과분 군비 별도 부담(표기 안함)
- **5. 사업기간**: 2018년~2022년(5개년)

6. 주요 사업내용

가. 사업내용

- 기초생활 기반확충 및 지역경관 개선 : 창의파크(문화·교육·돌봄, 다목적 광장, 주차장) 조성

[조성방법: 창의동(신축), 작동(리모델링), 놀이동(신축)]

- 지역역량 강화 : 교육 및 컨설팅, 마을경영지원
- 기타사항: 생활SOC 사업 연계(충북형 농시 조성사업, 생활SOC 복합화사업)
- 나. 사업효과 : 증평읍 중심지에서 도안면 등 배후마을로 문화·교육 프 로그램 전파를 통해 지역 전반의 균형발전 및 거점기능 강화
- 7. 사업시행자 : 증평군수
- ※ 기타 시행계획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증평군 도시교통과(증평군 경제개발국 도 시교통과 사업담당 ☎ 043-835-3952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증평군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0-7호

「증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증평군 자치법규 등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9월 25일 중 평 군 수

증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-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용자로 한정하여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·징수 하도록 용어를 구체화함
- 하수도사용료 부과액에 대해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결정 통지 기간을 60일로 구체화
- 과오납금에 대한 소멸시효 명확히 설정[사용료 및 수수료 : 3년, 과오납금 : 5년]

2. 주요내용

-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용자로 한정하여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·징수 하도록 용어를 구체화(안 제12조)
- 하수도사용료 이의신청에 대한 신속한 결정 통지기간 마련(안 제23조)
- 과오납금에 대한 소멸시효 명확히 설정(안 제24조의 2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·법인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증평군수 [참조 : 상하수도사업소, 증평군 증평읍 중앙로 168]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상하수도사업소(전화 : 043-835-4094, 팩스 : 043-835-3099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기재사항

- 1)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 · 반 여부 및 그 사유)
- 2) 의견제출자의 성명(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. 주소 및 전화번호
- 나. 제출방법: 서면, 전화, 팩스, 직접 방문
- 다. 제출기간: 2020. 9. 25. ~ 10. 16.(21일간)

4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증평군청 상하수도사업소(전화: 835-4094. 팩스: 835-3099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[붙임]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- □ 조 례 명: 증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
 - 성명(단체명):
 - 주 소:
 - 연 락 처:

조례안 내용	찬성여부				의 견	비	า
<u> </u>	찬	성	반	대	ا ا	. 1 .	

증평군 조례 제 호

증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증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1항 중 "법 제15조에 따라 사용 공고된 배수구역 또는 하수처리 구역을"을 "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자(이하 "공 공하수도 사용자"라 한다)를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「수질 및 수생 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제8항"을 "「물환경보전법」 제32조제8항"으로 한다.

제18조제7호 중 "자"를 "경우"로 한다.

제23조제1항 중 "자는"을 "자(이하 이 조에서 "이의신청인"이라 한다)는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에 관한 결정을 하고,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4조의2(소멸시효) 하수도사용료 및 하수도점용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「민법」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하며,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그 밖의 납부금, 가산금 등에 대한 소멸시효는 「지방재정법」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증평군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0-8호

「증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」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 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증평군 자치법규 등 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9월 25일 중 평 군 수

증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- 하수도사용료 감면 대상에 대해 포괄적 규정을 삭제하고 구체적 으로 열거 (비영리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으로 하수처리장, 분뇨처 리장:면제)
- 과오납금 반환 시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고려한 이자를 가 산하여 반환토록 규정

2. 주요내용

- 하수도사용료 감면 대상 구체적으로 열거(시행규칙 안 제12조)
- 과오납금 환급절차 ·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 (시행규칙 안 제15조)

3. 의견제출

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·법인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증평군수 [참조 : 상하수도사업소, 증평군 증평읍 중앙로 168]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상하수도사업소(전화: 043-835-4094, 팩스: 043-835-3099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기재사항

- 1)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 · 반 여부 및 그 사유)
- 2) 의견제출자의 성명(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. 주소 및 전화번호
- 나. 제출방법: 서면, 전화, 팩스, 직접 방문
- 다. 제출기간: 2020. 9. 25. ~ 10. 16.(21일간)

4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증평군청 상하수도사업소(전화: 835-4094, 팩스: 835-3099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[붙임]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- □ 규 칙 명: 증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
 - 성명(단체명):
 - 주 소:
 - 연 락 처:

조례안 내용	찬성여부				의 견	비	า
<u> </u>	찬	성	반	대	ا ا	. 1 .	

증평군 규칙 제 호

증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증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제18조제1항제7호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"을 "제18조제7호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"로 하고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"제1항의 규정"을 "제1항"으로, "감면신청서를"을 "등 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"로 하고,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4. 비영리 목적의 하수처리장 및 분뇨처리장
-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「증평군 상수도 급수 조례」 제40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신청을 한 경 우에는 이 규칙에 따라 감면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.

제1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③ 제1항에 따른 과오납금의 환불은 환불하는 연도의 징수금 또는 세출예산에서 환불하고,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의 다음 날부터 지급 결정일 까지 기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62조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가산하여 반환한다.
- 1. 잘못 부과된 징수금의 납부 후, 징수금의 부과 취소 및 경정 등으로 발생한 과오납금의 경우에는 그 징수금의 납부일

- 2. 적법하게 부과된 징수금에 대하여 납부자의 착오납부 또는 이중납 부로 인하여 발생한 과오납금의 경우에는 납부자의 과오납금 반환신 청 접수일
- 3. 적법하게 부과된 징수금의 감면으로 발생한 과오납금의 경우에는 그 감면 결정일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